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본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규모

가. 예산(안) 편성중점방향

- 실업대책등 IMF관련경비 확보
-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지원 중점
- 세입결손 전망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편성

□ 편 성 기 준

< 세 입 예 산 >

- 지 방 세 : '98 징수전망 재검토 계상
- 세 외 수 입 : 정상적 수입 및 기타 수입 감소
- 정부이전재원 : 수해복구예산 반영
(중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등)
- 지 방 채 : 수해복구비

< 세 출 예 산 >

- 수해복구예산중점 반영
- 경상비 조정분의 실업대책비 전환등 IMF 관련경비 계상
- 불요불급한 사업축소조정
- 기타, 당초예산 편성이후 예산반영이 필요한 세출소요 반영

나.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1,146,981,392	100.0	982,932,511	100.0	164,048,881	16.7
○ 일반회계	902,749,834	78.7	745,584,776	75.9	157,165,058	21.1
○ 특별회계	244,231,558	21.3	237,347,735	24.1	6,883,823	2.9
-공기업특별회계	199,561,323	17.4	195,253,227	19.9	4,308,096	2.2
· 공영개발	79,082,061	6.9	74,773,965	7.6	4,308,096	5.8
· 지역개발기금	120,479,262	10.5	120,479,262	12.3	-	-
-기타특별회계	44,670,235	3.9	42,094,508	4.2	2,575,727	6.1
·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	1,984,304	0.2	2,071,376	0.2	△87,072	△4.2
· 의료보호기금	30,635,556	2.6	27,738,739	2.8	2,896,817	10.4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8,926,291	0.8	8,926,291	0.9	-	-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2,164,084	0.2	2,398,102	0.2	△234,018	△9.8
· 중평출장소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960,000	0.1	960,000	0.1	-	-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1,146,981,392	100.0	982,932,511	100.0	164,048,881	16.7
지 방 세	145,110,000	12.7	169,129,000	17.2	△24,019,000	△14.2
세 외 수 입	300,740,187	26.2	300,566,025	30.6	174,162	0.1
-경상적세외수입	43,798,940	3.8	45,346,393	4.6	△1,547,453	△3.4
-임시적세외수입	256,941,247	22.4	255,219,632	26.0	1,721,615	0.7
지 방 교 부 세	242,743,960	21.2	155,207,909	15.8	87,536,051	56.4
지 방 양 여 금	78,509,494	6.8	78,509,494	8.0	-	-
보 조 금	331,318,951	28.9	250,961,283	25.0	80,357,668	32.0
지 방 채	48,558,800	4.2	28,558,800	2.9	20,000,000	70.0

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1,146,981,392	100.0	982,932,511	100.0	164,048,881	16.7
인 건 비	52,031,194	4.6	53,549,583	5.5	△1,518,389	△2.8
물 건 비	43,225,222	3.8	44,818,942	4.6	△1,593,720	△3.6
이 전 경 비	238,437,863	20.8	243,260,919	24.7	△4,823,056	△2.0
자 본 지 출	581,379,620	50.7	407,056,422	41.4	174,323,198	42.8
용자 및 출자	83,897,054	7.3	84,469,054	8.6	△572,000	△0.7
보 전 재 원	35,732,292	3.1	35,732,292	3.6	-	-
내 부 거 래	24,570,638	2.1	27,544,038	2.8	△2,973,400	△10.8
예비비 및 기타	87,707,509	7.6	86,501,261	8.8	1,206,248	1.4

2. 예산(안) 내역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470억원으로

- 일반회계 9,028억원,
- 특별회계 2,442억원으로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 일반회계 1,572억원
- 특별회계 69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대비 16.7%가 증가한 1,64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

- 지방세 240억원
-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등 세외수입 44억원이 감액편성되었고,
- 지방교부세 875억원,
- 국고보조금 78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 수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지방채를 200억원이 계상되어,
총 1,57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 인건비 및 기준경비 10억원
- 징수교부금 129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을 증액하는등
총 13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수해복구비
 - 국비 667억원
 - 국고전환금(중액교부금) 816억원
 - 도비부담 209억원중 실시설계비등 시급성 경비 18억원은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191억원을 편성하는등 총 1,674억원이 편성되었음.

- 중앙지원관련 사업비
 - 국고보조사업 118억원
 - 지방교부세사업 51억원
 - 중앙기금 사업 4억원등
 - 총 173억원이 편성되었음.

- 자체투자사업
 - 노인교통수당 2억원
 - 공공건물신축에 따른 물가인상분 5억원등
 - 총 1회 추경편성이후 예산반영이 긴요한 사업비 21억원이 편성되었음.

- 세입결손금 세출감액
 - 경상비 및 사업비 141억원
 - 예비비 22억원등 총 16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791억원으로 당초 748억원 보다 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은 이자수입 50억원이 증액되고 이월금 및 전년도 미수금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은 관리비 1억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전출금 11억원과 예비비 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 총 30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부담금 29억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
 - 총 22억원으로 감액되는 분담금 수입 2억원을 운영비에서 감액조정.
- 독립육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 총 20억원으로 미등록 학생에 따른 수업료 수입 1억원이 결손되어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조정

3. 검토 의견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국가재정분야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세출예산 감액조정과 지난 8월 우리도 일원에 내린 폭우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조속히 치유하기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편성이 급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효율성을 재고한 예산이라 사료되며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 자본보조에 있어서 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약 26억원을 회수하여 세입감소에 대비하고 수해복구와 같이 긴요한 분야에 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인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둘째,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예측 가능한 세수결함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지 못한 점과 지방채 200억 발행에 따른 기채상환 계획 및 향후 우리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수해복구예산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우선시하여 설계등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비부담이 많은 사업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전액 집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IMF 상황에서 국비 조달도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재원인 바,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만 집행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군 예산 집행도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 지도점검을 확행하기 바라며,

셋째,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수 절함에 따른 모든 경상비 절약기반에서 편성한 금번추경에서 증액된 P60 도 소개책자 발간등 3건,

P61, P314 시책추진비,

P64 임의단체 보조금,

P116 중평 문화회관 영사기 구입,

P312 읍성비산1리 진입로 확·포장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며,

p67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단가산정등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하였다가 감액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p229 '99 인도국제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지출하는 위탁금은 우리도 생산품 홍보를 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겠으나,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p247 시험연구비 삭감이유,

p300 도민채전 시설정비의 시기성 문제등은 상세한 설명과 부속자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